

## 학교발전기금이란?

정의 :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품, 모금금품, 조성금품 등

### 기금종류별 조성대상

**기부금품** :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·조직·단체 등

**모금금품** : 개인·조직·단체 등 일반인

※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,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

**자발적 조성금품** :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

※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을 조성하는 경우 소정의 조성절차를 거쳐야 함

관련법령 : 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

대상학교 :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학교(초·중·고·특수학교)

조성주체 :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
##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

### 사용용도

사용용도	집행기준
○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•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 • 교원 복지시설 및 관리실과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
○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함
○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•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,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, 학생학예활동 지원 • 학교운동부관련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 [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]
○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	• 학생복지 증진 및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

※ 수익자부담경비(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, 수련활동비, 급식비 등)의 목적으로는 기부금품만 가능 (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불가)

### 사용제한 사항

- 일반수용비성 경비의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
- 교직원의 각종 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
- 각종 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,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
- 기타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

##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 주의사항

### 접수제한 대상

- 리베이트(해당학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, 편·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)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
  - ※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은 접수가능
- 유지·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, 건물 등의 기부
- 단,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
- 각종 선거·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
- 교직원복지(교직원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 구입비 등)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
-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



### 조성시 금지사항

-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  - 학년별·반별·개인별·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
- 기부액의 최저·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
-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(타악)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
- 모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  -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(학생)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
  -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(알림장 등에 기록)으로 납부를 강요
-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
-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·강요하는 행위
- 발전기금조성 안내문(가정통신문)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  - 안내문(가정통신문)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
-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, 학부모단체, 교사,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(모금금품 제외-행사협조 가능)
- 학부모회, 어머니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(모금)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교장 등이 (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·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)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-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

희망액 조사는 안돼요.

발전기금 모집합니다. 희망액?



##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궁금해요



○ 학부모가 구성원인 조직단체가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나요?

☞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조성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, 어머니회 등에서는 모금할 수 없습니다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직·단체의 대표자가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의거하여 홍보는 할 수 있으나, 모금 및 조성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조직 및 단체의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 개인이 개별적으로 발전기금 접수처에 기탁하거나 접수처에 비치된 발전기금 기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조직·단체 등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접수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 및 영수증 발급방법은?

☞ 바자회, 알뜰매장, 위탁판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발전기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탁서를 조직, 단체 등의 명의로 작성하고, 기탁영수증도 조직, 단체 등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모금 참여자 중 특정이 기탁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 ※ 대표자 명의로 기탁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서는 안됨.(참여자 개별기탁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)

○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 등을 기탁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시 '기탁금액'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?

☞ 기탁자가 제시한 기탁금액에 의거 발급되되, 시중 물가정보 동향을 감안하여 기탁자가 제시한 기탁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※ 기탁금액 산출근거 자료는 학교발전기금영수증발급대장에 첨부·보관

○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
☞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는 신분안정성 및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, 학교발전기금은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조성방법 및 사용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